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8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2110-4535), 김성철 사무관(2110-4542)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2110-4511), 임 택 사무관(2110-4514)
유동훈 사무관(2110-4508)

제4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 인터넷 FTA 1380 설치, 제3자 원산지 확인사업 운영, 사후검증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해소에 총력지원-

1 **FTA활용 애로해소 통합창구로 'FTA 1380(콜센터,인터넷)'을 구축하여 on-off Line상에서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종합상담(10月예정)**

○ **(현황)** 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로 "FTA 콜센터 1380"을 운영(6.24일~)** 중이며, 개통이후 상담실적은 증가추세임

* **'FTA 콜센터 1380' 상담 실적(6.24일 개통 이후)**
- 6월(총234건) → 7월(1,434건) → 8.16일 현재(356건, 휴가기간 여파)
- 상담문의는 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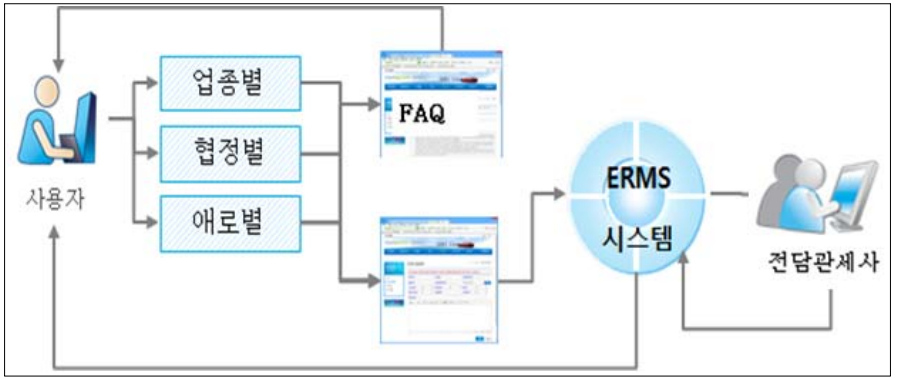
○ **(개선안) 인터넷 포털 'FTA 1380'(www.fta1380.or.kr)을 운영함으로써 FTA 활용애로를 on-off Line상에서 동시에 해소할 계획**

① **(온라인 상담기능 고도화) FTA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별 상담코너 운영*하고 24시간 이내 신속 애로해결 시스템**을 도입**

* 과거 주로 문의하였던 FAQ도 FTA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 별로 제공

** 분야별 전담 전문가(관세사 등)의 상담처리 결과를 이메일 ·SMS을 통해 24 시간 이내 신속히 통보·해결

< 온라인상담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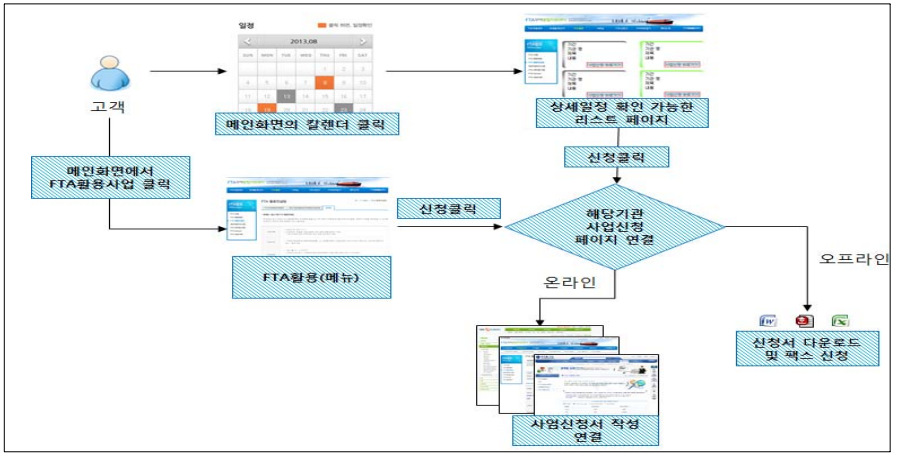


② **(FTA활용 지원사업 관련 통합정보 제공)** 방문고객이 FTA 활용지원 사업(컨설팅, 교육,설명회,행사 등)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사항을 통합공고

* 정부(산업부,고용부,관세청,중기청 등), 유관기관(중진공,원산지관리원 등)

- 기업 등 사용자가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on-off line으로 신속·편리하게 신청가능토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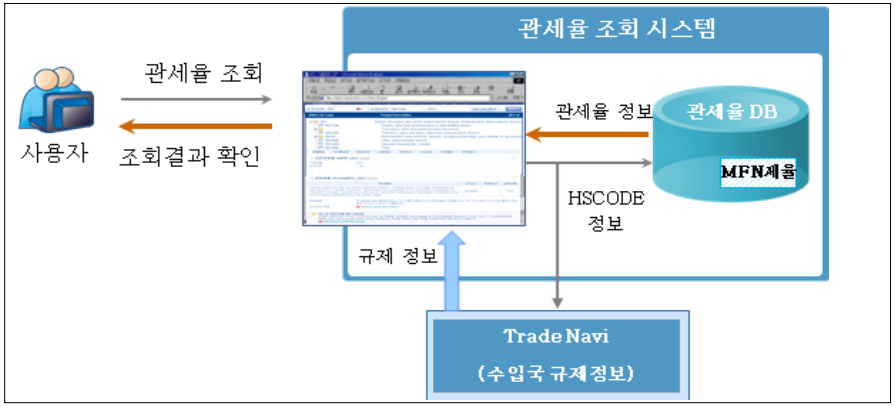
<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정보 제공 및 신청 시스템 >



③ **(모바일 지원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웹과도 연계하여 기업 및 사용자가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정보를 열람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④ **(FTA 상대국의 시장 정보 통합제공)** 관세율, 상대국 기술 장벽, 환경규제, 인증정보, 규격정보 등 FTA 활용관련 정보 및 상대국 시장 정보도 통합제공(통합무역정보시스템(Trade Navi) 등과 연계)

〈 관세율 및 상대국 시장 정보 제공 시스템〉



2 공신력있는 제3자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확인해 수출·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3자 확인제도」 시범 시행

○ **(배경)**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재료·부품 등을 제공하는 **협력기업의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하나 원활치 않음

- **(협력기업) 확인서 작성 및 자료관리에 부담,** 수출기업이 **원산지 확인서 이외의 정보제공 요구로 영업비밀 유출 우려**
- **(수출기업)** 협력기업이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

○ **(개선안)** 거래당사자 이외 **제3의 확인기관**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 제고**

① **(대상)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정합성 확인을 희망하는 협력기업**

② **(서비스) 협력사의 확인서 검토 후** 제3자 **확인결과서 발급,**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해결 컨설팅도 제공**

* 확인서 검토시 HS코드 일치 여부,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③ **(확인기관)**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④ **(시범사업)** 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도내 1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3자 확인 시범 실시**

-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14.1분기)을 바탕으로 **제3자 확인사업 확대** 또는 **제도화 방안 검토**

* 산업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 시범사업 MOU 체결('13.8.27)

⑤ **(기대효과)** 확인서 유통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전문가)의 검토·확인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 **(협력기업)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수출기업)**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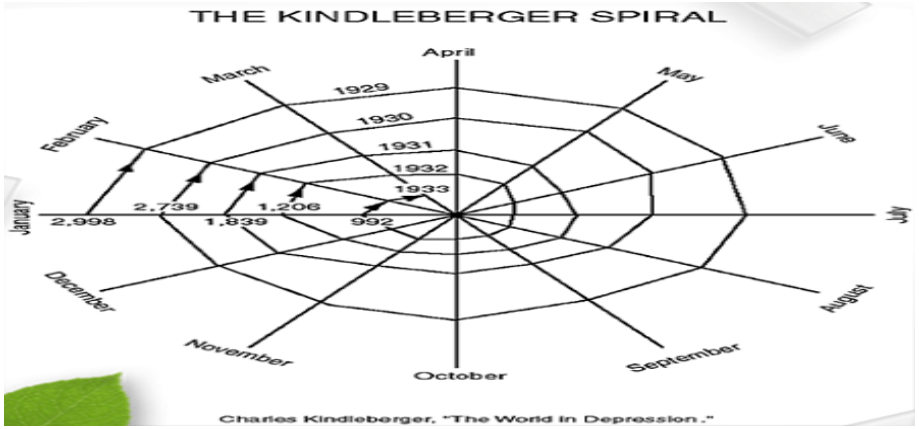
□ '13.8.29(목) 오후 2시30분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

*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 및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참석

□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회의시작에 앞서

○ 작고한 MIT 경제학과 찰스 킨들버거 교수의 "킨들버거 나선(The Kindleberger Spiral)"을 인용하며 대공황 시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나선 결과, 세계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면서 각국의 보호주의에 우려를 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필요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 한·중 FTA와 관련하여서는 농어업, 일부제조업 등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의 소통 강화를 당부

- 피해산업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경쟁력있는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을 통해 중국산과 차별화한다면, 한·중 FTA가 거대한 중국내수시장을 얻게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금번 회의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산업부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을 보고

- 공신력있는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 양측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을 보고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통합콜센터 'FTA 1380'을 인터넷 상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를 통합적으로 해소키로 하였음

- 인터넷 상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공지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음

-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상대국의 시장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임

○ 관세청은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

- FTA 활용과 검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FTA 활용이 높을수록 원산지 검증 위험도 증가 하므로 기업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미·EU 등의 사후검증에 대응할수 있도록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검증 툴 제공 등 하반기 기업의 사후검증역량 강화에 집중해 나갈 방침임

□ 김재홍 차관은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 02-2110-4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13.8.29(목), 14:30~15:50,
산업통상자원부 다산실(623호)

□ 참석: 관계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등 24명

* 주재 : 산업부 1차관, 간사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 회의안건(안)

①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산업부)

② 인터넷포털 'FTA 1380' 운영계획(산업부)

③ FTA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관세청, 비공개)

□ 회의진행(안)

순서	시간	비고
▪ 인사말씀	14:30~14:35(5분)	산업부 (1차관)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발표 및 토론	14:35~14:55(20분)	산업부
▪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발표 및 토론	14:55~15:15(20분)	산업부
▪ 「FTA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및 토론	15:15~15:45(20분)	관세청
▪ 마무리 말씀	15:45~15:50(5분)	산업부 (1차관)

참고 2 FTA 활용촉진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소속/직위	비 고
관계부처 (14명)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회의주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위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실장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
	중소기업청 차장	위원
	관세청 차장	위원
유관기관 (12명)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협회 부회장(FTA무역종합센터장)	위원
	KOTRA 전략마케팅 본부장	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본부장	위원
	대한상의 부회장	위원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위원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위원
	수출입은행 부행장	위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위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 방안

2013.8.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 1

Ⅱ. 원산지확인서 관리 실태 및 지원 현황 ····· 2

Ⅲ. 제3자 확인사업 주요 내용 ····· 3

Ⅳ. 시범사업 추진 현황 (경기FTA활용지원센터) ····· 6

Ⅴ. 향후 계획 ····· 7

Ⅰ. 추진 배경

□ 수출업체의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고 **수출자** 또한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원산지확인서>

◇ (FTA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2조3.)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 **(협력사)**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에 따른 검증부담** 등으로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

- 원가정보와 자재명세서 등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따른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도 우려**

- **전담인력 부족**과 **복잡한 서류** 등으로 **업무부담** 증가

○ **(수출자)** 협력사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부정확한 판정이나 근거자료 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의문**

- 확인서의 **정합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요구**와 검토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

- 사후검증시 **잘못 작성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의 피해 우려

□ 확인서 발급부담 완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자 확인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 확대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3자 확인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13.6.27)

Ⅱ. 원산지확인서 관리 실태 및 지원 현황

□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를 외부지원 없이 **자기책임** 아래 **발급·관리**

○ 확인서 발급시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 부재**

*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준비 및 발급기간 소요 등 불편함이 있으나 사후검증 대비 등에 대한 부담은 적음

○ 원산지 관리의 기본요소인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도 수출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협력사**의 경우 **신청 불가능**

□ 수출기업과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만을 위해서는 **부가세 세액공제**가 **유일**

* 수출협력업체수 : 약 7만개사로 추정(수출기업수 : 약 8.6만개사)
 - 구매확인서 관련 물품공급 업체수 57,230개사
 - 내국신용장 관련 물품공급 업체수 12,380개사

○ **컨설팅지원사업**의 경우 **약 30% 정도만이 협력사 지원** 추정 ('12년도 FTA닥터 컨설팅 사업결과*)

* 직수출 729개사, 상사매출 75개사, **협력사 349개사** 등 총 1,149개사 컨설팅

○ 각종 **교육, 설명회**의 경우에도 **참여유인**이 수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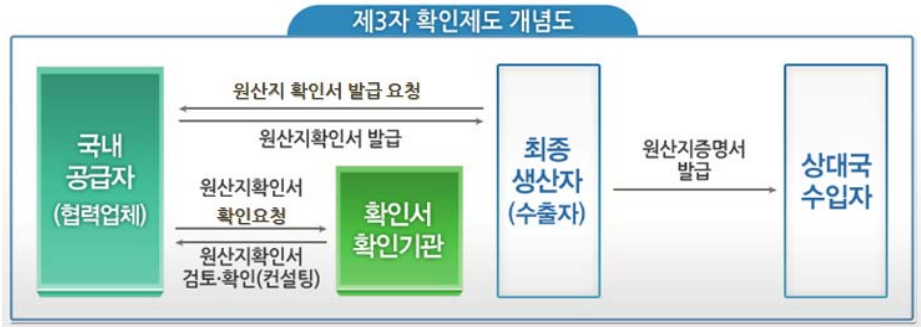
○ 현재 **확인서발급**시 건당 1만원,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이용실적 저조**

* '12년 실적 : 세액공제 신청기업수 61개사, 세액공제금액 14백만원

Ⅲ. 제3자 확인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 **[개념]** 거래당사자 이외 **제3의 확인기관**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 제고



□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협력사**

○ **원청업체**가 **추가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협력사 자체적으로** 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등이 대상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기업**(원재료 납품과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 등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사업내용] 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해결 컨설팅도 제공

○ 확인서 검토시 HS코드 일치 여부,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 잘못 발행된 확인서의 경우 원인분석, 비국내산 판정의 경우 원인분석 및 국내산으로의 변경 가능성·방법 등 컨설팅

○ **확인서 최초 발급업체** 및 제출 서류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밀착 관리**

○ **원산지확인서**에 **첨부**하여 국내산 판정에 대한 **확인결과서**를 작성, 확인기관의 인장과 확인자가 서명 날인 **후 발부**

원산지 확인결과서 (예시)

업체명 : ○○○
발급번호 : 경기FTA센터 2013-01

위 업체에서 제출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 원산지 확인서에 명시된 해당품목의 원산지 확인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3. 08. 27.

경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직인)
담당 관세사 홍 길 동 (인)

※ 본 원산지 확인결과서는 당해 업체에서 제출받은 원산지 입증서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입증서류의 허위와 흠결 및 그 밖의 다른 사유 등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기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정부로부터 FTA 지원업무기관으로 기 지정을 받아 전문관세사가 FTA 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선정**

- 대상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금년중 **시범사업 추진 후**, 평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검토

* 경남FTA센터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책임문제] 근거서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원산지 판정으로 수출자** 등이 사후검증시 **피해**를 입을 경우 확인서 발급에 대한 **책임문제** 발생

○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 (FTA특례법사무처리고시 제2-2-3조)**(신청서류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신청서류의 흠결없는 착오** 등으로 인한 **원산지 확인 오류**의 경우에도 **확인기관(관세사)**이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동 서비스는 **기업**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수수료 등)이 **없으며**, 확인 방식 또한 **법적 증명**이 **아닌** 확인기관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사실상의 증명**

2 기대 효과

□ 확인서 유통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전문가)의 검토·확인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발행되는 확인서에 대한 제3의 기관을 통한 검토, 확인으로 **효율적 원산지 관리 가능**

○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

Ⅳ. 시범사업 추진 현황 (경기FTA활용지원센터)

□ **운영 주체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산업부와 경기도 지원·감독, 경기FTA활용지원센터(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관/3개 기관 시범사업 추진 MOU 체결('13.8.27)

□ 사업기간/예산 : '13.8~12월(4개월)/43백만원(산업부 33, 경기도 10)

□ 지원 대상 :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중소협력기업 100개사

* **인증수출자 지정업체는 제외/**
원산지확인서가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자동차 업종** 우선 **타깃팅**

** 100개사(목표)=12.5개사(관세사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4월×2인

□ **추진 방식** : 전문관세사가 근거서류 검토, 현장 확인후 확인서 발급

○ (1차)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및 제출된 근거서류와의 정합성 검토, 근거서류 미비시 자료 보완 요청

○ (2차) 서류 오류 또는 제출서류만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근거서류 확인 및 컨설팅

○ (3차) 확인서 발급, 근거서류 보관 방법 등 교육

□ **전문가** : 전문 관세사 채용(정규직 또는 계약직), 월급제

* FTA종합센터 파견관세사 연봉 수준(50백만원, 월 4.5백만원)

□ **확인 방법** : 지역센터가 인장 날인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센터 보증 방식**을 취하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담당 관세사**의 **서명 병행**

*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시 입증서류의 허위와 흠결 및 그 밖의 다른 사유 등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따른 모든 법적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을 명시

참고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제3자 확인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운영 주체 : 창원 상공회의소**

○ 사업 기간/예산 : '13.3~12월/60백만원(경남도 지원)

○ 지원 대상 :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중소협력기업(120건)

* 인증수출자 지정업체는 제외

○ **추진 방식** : 전문 관세사가 원산지확인서 **발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 확인 후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

○ **전문가** : 센터와 관세사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라 비용 지급

□ **확인 방법** : 원산지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관세사**의 **개별 보증 방식**

*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시 원산지 입증서류 등의 허위로 인한 원산지 변경의 경우 발급관세사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

□ **운영 현황**(7월말 현재) : 54건 진행중 또는 완료

☞ 경남센터의 경우 **제3자 확인과 FTA 일반컨설팅이 혼합된 형태**이고, **관세사 개별 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경기센터와 차이**

Ⅴ. 향후 계획

□ 2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14.1분기)을 바탕으로 **제3자 확인사업 확대** 또는 **제도화 방안 검토**

○ 확인방식(센터, 관세사), 대상업체 범위, 검토기간, 적정 품목 수, 책임범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

○ 16개 지역센터로 **확대** 또는 필요시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고시 등)에 **근거 마련 등 제도화 검토**(기재부 협의)

참고 4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2013.8.29

산업통상자원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운영 방향 ·····1

Ⅲ. 세부 추진방안 ····· 3

1. 온라인 상담기능 고도화 ·····3

2. FTA 활용 지원사업 통합 안내 ·····5

3. 모바일 웹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6

Ⅳ.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 7

【참고 1】 메인화면 구성도 ·····8

【참고 2】 메뉴별 주요내용 ·····9

Ⅰ. 추진배경

□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FTA 콜센터 1380"을 운영중**

○ 현행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전화(1380) 상담*을 통해 해결**

* 'FTA 콜센터 1380' 상담 실적(6.24일 개통 이후)
- 6월(총234건) → 7월(1,434건) → 8.16일 현재(356건, 휴가기간으로 감소)
- 상담문의는 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임

□ **'FTA 1380'을 인터넷상(www.fta1380.or.kr)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On-Off line 종합상담체계 구축**

○ 전화 상담으로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온라인 상으로 애로사항을 상세히 적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각급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FTA 활용지원사업 전체를 파악,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

- 현재는 정부지원사업이 추진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고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전체를 파악, 활용하기가 곤란

○ 중소기업의 FTA 전담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운영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

- 메인화면을 중소기업이 많이 찾는 메뉴 順(좌에서 우로) 으로 배치하고 **기업인 등이 관심이 많은 컨텐츠 중심으로 구성**

*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FTA 1380' 구축·운영 등 온라인상으로도 상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회의 보고(6.25)

Ⅱ. 운영 방향

□ 현행 무역협회 **FTA 포털(www.okfta.or.kr)을 'FTA 1380' 인터넷 사이트인 'www.fta1380.or.kr'로 확대 개편**

* 운영관리 : 산업부(예산 지원 등), 운영주체 : 한국무역협회

□ 현행 'FTA 콜센터 1380' 상담 방식에 On-Line 상담도 추가하여 **업종별·협정별·애로요인별로 구분, 전문 상담체계 구축**

○ 7명의 콜센터 상담 전문가가 인터넷 상담도 처리하는 **On-Off Line 통합상담체계**로 운영

○ 등록된 상담내용을 24시간이내 방문고객 이메일로 자동답변 처리하는 ERMS(Email Response Management System) 구축

□ **FTA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한 눈에 파악,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정부(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등) 및 유관기관(무역협회, 중진공, 지역센터)**이 추진하는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합 안내**

○ 각 기관별 포털 운영 전담자에게 정보이용 권한 ID를 부여하고 **각 기관이 수시로 관련내용 업데이트 및 안내**

* 사례 : 지자체와 협조, 해외전시회 통합 포털 사이트 운영(KOTRA)

□ **모바일 웹 연계 운영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앱과도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FTA 활용 정보를 열람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

○ 현행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세율, 非관세정보(상대국 기술장벽, 수입요건 등), 각종 FTA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토록 추진

Ⅲ. 세부 추진방안

1 온라인 상담기능 고도화

□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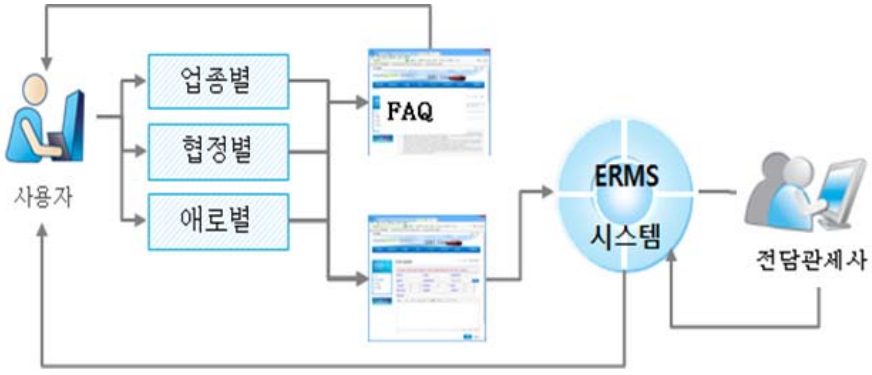
○ **(상담코너 확대)** 현행 온라인 상담이 FTA 협정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주요 업종별, 애로사항별로 확대 운영

* 과거 주로 문의하였던 FAQ도 현행 협정별에서 업종별,애로별로 확대

○ **(24시간 이내 답변)** 이메일 ·SMS을 통해 상담처리 결과를 24시간 이내 통보하여 신속한 해결 지원체계 구축

○ **(전화 상담 '콜센터 1380'과 연계)** 전화 상담 전문가(관세사 등)가 온라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상담토록 하여 기업 편의성 제고

< 온라인상담 구성도 >



□ 기대 효과

○ 방문자 스스로가 FAQ 검색을 통해 자체 진단 후 원하는 정보를 상담 등록하고 24시간 이내 신속한 답변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업종별 상담등록 방법(예시) >

① 주요 메뉴(FTA 1380, FTA Flow 등) 중 'FTA 1380 상담' 클릭
② 업종별 상담코너 클릭 후 자동차 부품 등 원하는 업종 클릭
③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FTA 1380 전문가 상담'란에 등재



2 FTA 활용지원사업 통합정보 제공

□ 추진 방안

○ **(통합 안내)** FTA 지원기관* 사업을 **통합 안내****하여 방문고객이 일목요연하게 FTA 활용지원 전체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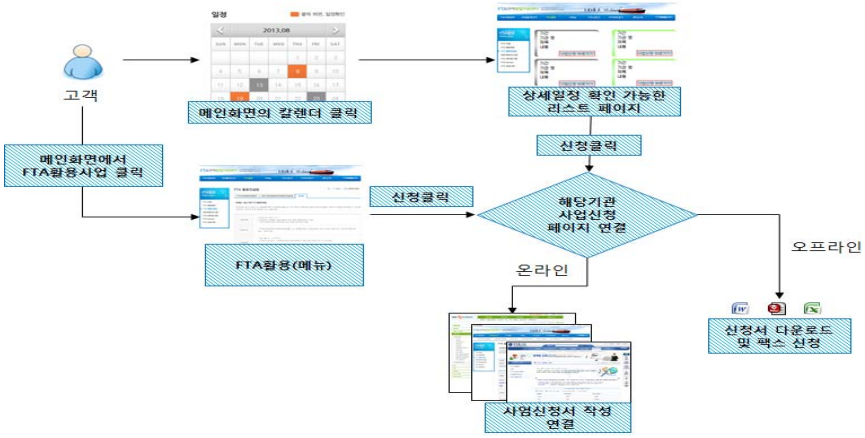
* 정부(산업부, 고용부, 관세청, 중기청 등), 유관기관(중진공, 원산지관리원 등)

** 기관별 포털 운영자에게 정보이용 권한 ID를 부여하고 각 기관 스스로 사업내용을 수시로 공고하고 관련 내용 업데이트 등 관리

○ **(해당기관 사이트 연계)** 기업 등 고객이 사업신청 하고자 하는 기관 사이트로 이동, 온라인 신청 또는 서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신청

* **FTA 캘린더를 제작, FTA 지원기관의 교육, 세미나, 행사 등의 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업신청 절차도 >



□ 기대 효과

○ 각급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FTA 활용정보를 통합 안내함으로써 FTA 활용정보 이용의 접근성 강화

3 모바일 웹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모바일 웹과의 연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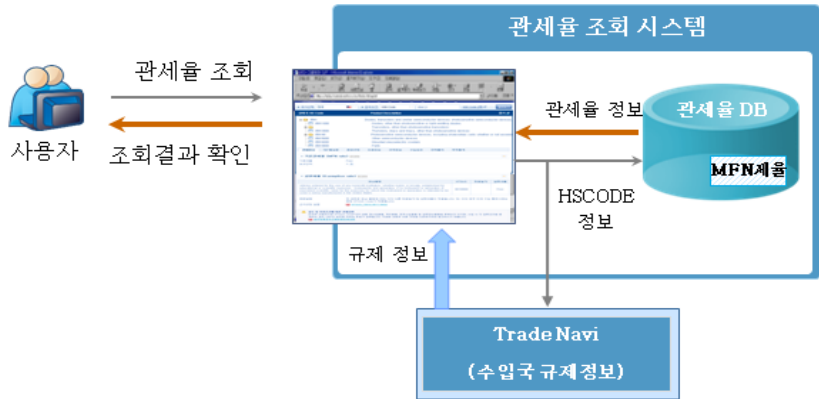
○ **(모바일 웹과 연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IT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FTA 활용 정보를 열람,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

○ **(FTA 담당자 대상, FTA 정보 자동 전송)** FTA 뉴스 및 해외시장 정보를 등록한 FTA 담당자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자동 전송

□ 통합무역정보시스템(Trade Navi) 등과 연계

○ 관세율 정보 뿐만 아니라 **상대국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정보*도 제공하여 수출(입)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상대국의 기술장벽, 환경규제, 인증정보, 규격정보, 수입요건 등



□ 기대 효과

○ 'FTA 1380'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관세율, 원산지, 수입규제 관리 정보 등 FTA 활용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FTA 활용을 제고

Ⅳ.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 추진 일정

○ 인터넷 사이트(www.fta1380.or.kr) 구축 : 8 ~10월

○ 인터넷 사이트(www.fta1380.or.kr) **운영 관계기관 협의** : 9월

○ 인터넷 사이트(www.fta1380.or.kr) **개설 운영** : 10월 ~

○ 인터넷 사이트(www.fta1380.or.kr) 상담 운영실적 분석 : 12월

□ 관계기관 협조사항

○ **기관별 포털 운영자 지정(1명) : 9월말**

- (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관세청, 중기청 등
- (유관기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산지관리정보원 등

* 산업부는 각 기관별 운영자에게 정보이용 권한 ID 부여(9월)

○ **각 기관 스스로 FTA 활용지원사업**(교육,설명회,컨설팅,세미나 등) **일정 및 내용 등 간략한 개요를 FTA 캘린더에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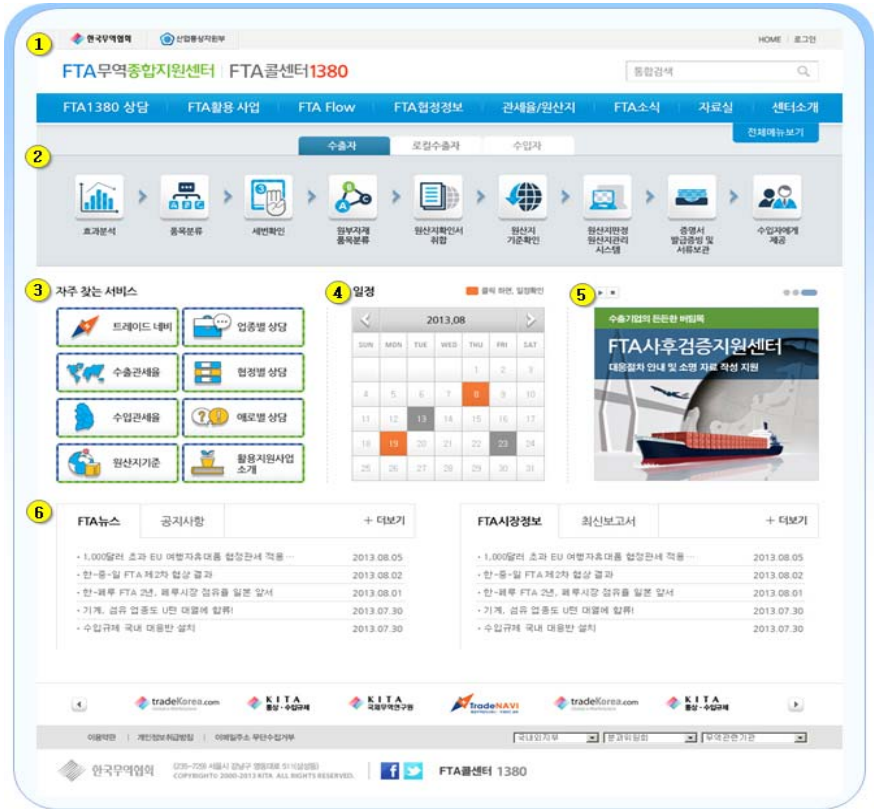
- 유관기관과도 FTA 캘린더를 공유하여 효과 극대화

* 일정 변경시에는 수시 업데이트하여 기업인 등의 민원 방지

○ **'FTA 1380' 포털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유기적 협조**

- 'FTA 1380' 포털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기업인 등이 제기하는 개선 과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참고 1 메인화면 구성도



①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찾는 메뉴 順으로 배치(좌에서 우로)

② 방문고객별로 관심이 많은 컨텐츠 중심으로 구성
- 수출자의 경우, 상품의 수출 프로세스별 항목 나열

③ 기업인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서비스를 메인화면 중앙(좌측 부문)에 배치

④ FTA 캘린더를 통하여 주요 사업을 시각적으로 확인

⑤ 사후검증지원 등 현안사항 위주로 공지

⑥ FTA 뉴스 및 공지사항, FTA 체결국의 최신 시장 정보 등 제공

참고 2 메뉴별 주요내용

메 뉴	주요 내용
FTA 1380 온라인 상담 **(신규)**	○ 상담등록시 업종별, 협정별, 애로요인별로 별도 페이지를 구성하여 등록하고 분야별 전문가 온라인 답변 제공 ○ 과거 상담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FAQ 기능 개선
FTA 활용 **(신규)**	○ 정부 추진 각종 FTA 지원사업(교육 등)을 통합공고, 안내 ○ 메인화면 접속시 교육,행사 등을 한 눈에 확인토록 추진 ○ 네비게이션 바 도입으로 쉽게 관련 메뉴로 이동토록 개발
FTA flow	○ (수출자) FTA 효과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후검증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하고 서식 제공 ○ (로컬수출자) 원부자재 공급자입장에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필요성, 원산지 확인서 입수 등 필요한 정보 및 양식 제공 ○ (수입자) 수입신고서 작성 및 FTA 특혜관세 신청요령 등
FTA 협정정보	○ FTA 체결국별 관세율/원산지기준, 최신 뉴스 등을 제공
관세율/원산지	○ 수출 및 수입관세율, MFN 관세율 등 각종 관세요율 제공 ○ Trade Navi와 연계를 통한 수입국의 규제정보 제공 등
FTA 소식	○ 공지사항, FTA 뉴스, FTA 일정, FTA 바로 알기
자료실	○ 법령 및 서식, FTA e-book, FTA 용어, FTA 무역통계, FTA School, FTA 성공 사례 및 수기
센터 소개	○ 인사말, 연혁 및 조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소개, FTA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웹페이지 제공 ○ 해외공관의 무역정보 페이지 링크 등